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10 선고 2016나9293 판결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웅, 이재호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상용

변론 종결 2019. 9. 5.

판결 선고 2019. 10. 10.

제 1 심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 8. 31. 선고 2014가단19236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896,080원 및 2015. 7. 1.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장용지 1,6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19, 18, 26,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40,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 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장용지 1,653㎡ 중 별지 도면 표시 1, 19, 18, 26,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를 인도하고, 위 지상에 설치된 철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1,921,675원과 2015. 7. 1.부터 위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고양시 일산동구 C 공장용지 1,653㎡(이하 'C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토지와 인접한 같은 곳 D 대 182㎡(이하 'D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06. 4. 28.부터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19, 18, 26, 25, 24, 23, 22, 21, 20,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7㎡[이하 '선내 (가) 부분' 이라고 한다] 지상에 철제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그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고, 원고는 2011. 4. 26. C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 토지 중 선내 (가) 부분의 2011. 4. 26.부터 2011. 12. 31.까지의 임료는 237,530원(= 2011년 연 임료 346,800원 × 250일/365일, 십 원 단위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이고, 2012. 1. 1.부터 2015. 6. 30.까지의 임료 합계액은 1,658,550원(= 2012년 457,470원 + 2013년 471,750원 + 2014년 487,560원 + 2015년 241,770원)이며,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월 임료는 40,630원이다.

[인정근거] 갑 6호증의 기재, 제1심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선내 (가) 부분 지상의 철제 컨테이너를 철거하고 선내 (가)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선내 (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써 임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히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임료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관하여 보면, 2011. 4. 26.부터 2015. 6. 30.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896,080원(= 237,530원 + 1,658,5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선내 (가) 부분의 2015. 7. 1. 이후의 월 임료도 40,630원일 것이라 추인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1.부터 선내 (가) 부분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0,63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선내 (가) 부분에 관한 측량결과가 매번 달랐던 것에 비추어 보면 제1심의 측량감정결과만으로 피고가 C 토지를 침범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설령 피고가 C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측량감정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대한지적공사 경기도본부 고양시지사장(이후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으로 변경됨)에 대한 2014. 10. 21.자 사실조회 결과, 한국국토정보공사 고양지사장에 대한 2017. 6. 19.자 사실조회 결과, 고양시 일산동구청장에 대한 2017. 8. 23.자 사실조회결과, 제1심감정인 E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 토지에 관한 최초 등록절차는 임시토지조사국측량규정(조선총독부훈령 제21호, 1913. 4. 22.)에 측량되어 지적도에 등록된 것으로 보이고, D 토지는 지적측량규정(대통령령 제951호, 1954. 11. 12.)에 따라 측량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피고는 2006. 4. 28. 대한지적공사 고양지사를 통해 D 토지에 대하여 현행법에 의한 경계복원측량 절차를 거친 후 컨테이너를 설치한 사실, 그런데 이후 2011. 6. 7.경 대한 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에서 다시 현행법에 의한 경계복원 측량을 실시하여 피고가 C 토지

중 23.2㎡를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2012. 10. 12.과 2012. 11. 29. 대한지적공사 경기지역본부 고양지사를 통하여 실시된 재 경계복원 측량에서 피고가 C 토지 중 18.85㎡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측량결과가 변경된 사실, 제1심 감정인 E은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토지의 면적이 17㎡에 해당한다고 측량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한국국토정보공사 서울지역본부장에 대한 2019. 6. 21.자 사실조회 결과, 당심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감정인의 감정결과 는 그 감정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이를 존중하여야 하고(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다1733 판결 등 참조), 경계침범여부가 문제가 되어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지에 복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계복원측량은 등록할 당시의 측량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C 토지는 1913.경, D 토지는 1954.경 등록되었는바, 분할측량 당시 비슷한 조건의 주위 기지점에 의한 경계복원측량은 분할당시 현형을 측정한 도로, 건물 등의 구조물이 남아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새로이 설치된 지적기준점에 의한 전자평판측량 방법 이외에는 측량할 수 있는 방법이 따로 없는 점, 피고가 침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선내 (가) 부분의 면적에 관한 측량 결과가 매번 다소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그 일관된 결과는 피고가 C 토지를 침범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현재 이 사건에서 인정되고 있는 침범 면적이 여러 번의 측량결과 중 가장 작은 값을 적용하고 있는 점, D 토지에 대하여 2006. 4.28.경 경계복원측량을 하였던 F가 측량 착오를 이유로 훈계처분을 받은 점 등의 사정또한 인정되므로, 앞서 인정한 사정만으로 제1심감정인 E의 측량감정결과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권리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22090 판결 참조).

피고는 선내 (가) 부분의 면적이 넓지 않고, 현재 선내 (가) 부분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영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러한 피고에게 이를 철거하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원고에게는 상대적으로 큰 이익이 아니지만 피고에게는 가혹한 손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원고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의 금전 지급을 명하는 부분 중 위 인정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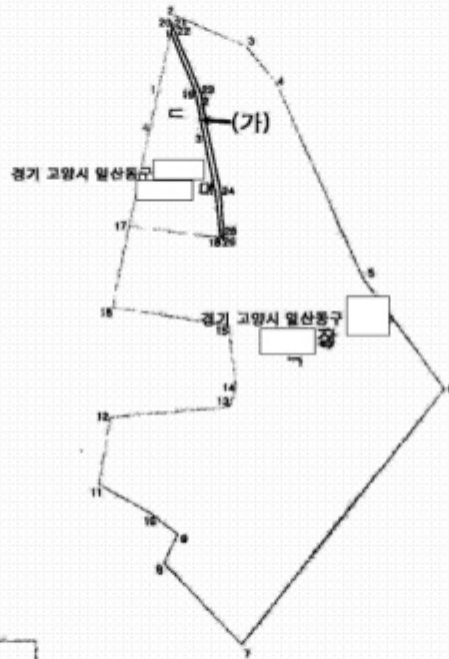
재판장 판사 조규설, 판사 김혜선, 판사 김보라

[별지 도면]

사건번호 : 2014가단19236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등

원 고 :

피 고 :



범 제	영 황
원 동스선	
경리이년	
지번 번호	면적(㎡)
1000	1000
12	12
1000	1000

검정인 : 지적선업기사

